

월세 연체료 면제를 위한 조건 양식

몽고메리 카운티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2020년 3월 5일 당일이나 그 이후가 납부 날짜인 월세의 미납 또는 늦게 지급된 월세에 대한 연체료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이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

이 양식을 받은 후 90일 안에 이 양식에 서명하여 집주인에게 반환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2020년 3월 5일부터 2022년 5월 15일 사이에 대해 적용된 미납 또는 늦게 지급된 월세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연체료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이 양식을 자기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더라도, 이 양식을 집주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 (1) 본인은 코로나-19 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예를 들어, 실직, 근무 시간 단축, 병간호, 식구 간병 등의 이유로)을 겪었습니다;
- (2) 지난 30 일 또는 2020 납세 연도 동안 가구 총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MI)의 50% 또는 그 이하였습니다(뒷면의 표 참조); 그리고,
- (3) 2020 년 8 월 또는 그 이전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 주소는 _____입니다.

본인은, 본인이 아는 한, 위 정보가 진실하고, 올바르며,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세입자 서명: _____ 정차제 이름: _____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양식을 제공한 날짜: _____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양식을 제공한 날짜(해당하면): _____

세입자를 위한 정보 및 안내 사항

- ❖ 자격이 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www.mc311.com/rentrelief 에서 코로나-19 월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여전히 현재 거주하는 장소의 임대료를 내고 다른 임대 계약 및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 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 계약을 위반하거나, 세입자가 임대 기간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퇴거될 수 있습니다.
- ❖ 이 양식, 월세 인상, 연체료, 또는 다른 임대 문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311(240-777-0311), 또는 집주인-세입자 문제 사무실 이메일 주소인 olta.intake@montgomerycountymd.gov 로 연락하십시오.

AMI 표

AMI 는 지역 내 중간 소득입니다. 이는 지역 내 모든 세대의 “중간” 소득을 참조하여 계산됩니다. 아래 표에는 최대 연간 또는 월간 총소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식구 수	가구당 최대 연간 총소득의 50% AMI	가구당 최대 월간 총소득의 50% AMI
1	\$45,150	\$3,763
2	\$51,600	\$4,300
3	\$58,050	\$4,838
4	\$64,500	\$5,375
5	\$69,700	\$5,809
6	\$74,850	\$6,238
7	\$80,000	\$6,667
8	\$85,150	\$7,096